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 ○ 상하수도 요금 인상(안)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 개정(별표 1)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3.23. ~ 4.12)
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 - ○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성주군수도급수조례」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.
 - ○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 - ○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/ 업종	사용구분(㎥/월)	단 가(원/㎥)		
		2016년 10월 고지분 부터	2017년 10월 고지분 부터	2018년 10월 고지분 부터
가정용	20㎥이하	200	240	290
	21㎥이상~30㎥이하	220	270	320
	31㎥이상	240	290	350
일반용	50㎥이하	240	300	360
	51㎥이상~100㎥이하	290	360	430
	101㎥이상~300㎥이하	370	450	530
	301㎥이상~500㎥이하	440	540	640
	501㎥이상	750	930	1,100
대중탕용	300㎥이하	230	280	330
	301㎥이상~500㎥이하	270	330	400
	501㎥이상~700㎥이하	360	450	530
	701㎥이상	480	590	700
산업용	1㎥ 당	210	210	210

주 1. 상수도사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,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 - ○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성주군수도급수조례」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.
 - ○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 - ○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/ 업종	사용구분(㎥/월)	㎥당 단가(원)
가정용	20㎥이하 21㎥이상~30㎥이하 31㎥이상	150 160 180
일반용	50㎥이하 51㎥이상~100㎥이하 101㎥이상~300㎥이하 301㎥이상~500㎥이하 501㎥이상	190 220 280 340 580
대중탕용	300㎥이하 301㎥이상~500㎥이하 501㎥이상~700㎥이하 701㎥이상	170 210 270 350
산업용	1㎥ 당	210

주 1. 상수도사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,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

개 정 안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 - ○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성주군수도급수조례」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.
 - ○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 - ○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/ 업종	사용구분(㎥/월)	단 가(원/㎥)		
		2016년 10월 고지분부터	2017년 10월 고지분부터	2018년 10월 고지분부터
가정용	20㎥이하 21㎥이상~30㎥이하 31㎥이상	200 220 240	240 270 290	290 320 350
일반용	50㎥이하 51㎥이상~100㎥이하 101㎥이상~300㎥이하 301㎥이상~500㎥이하 501㎥이상	240 290 370 440 750	300 360 450 540 930	360 430 530 640 1,100
대중탕용	300㎥이하 301㎥이상~500㎥이하 501㎥이상~700㎥이하 701㎥이상	230 270 360 480	280 330 450 590	330 400 530 700
산업용	1㎥ 당	210	210	210

주 1. 상수도사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,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